

#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http://www.khealth.or.kr)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서

F  
C  
T  
C

₩ 4,500  
₩ 2,500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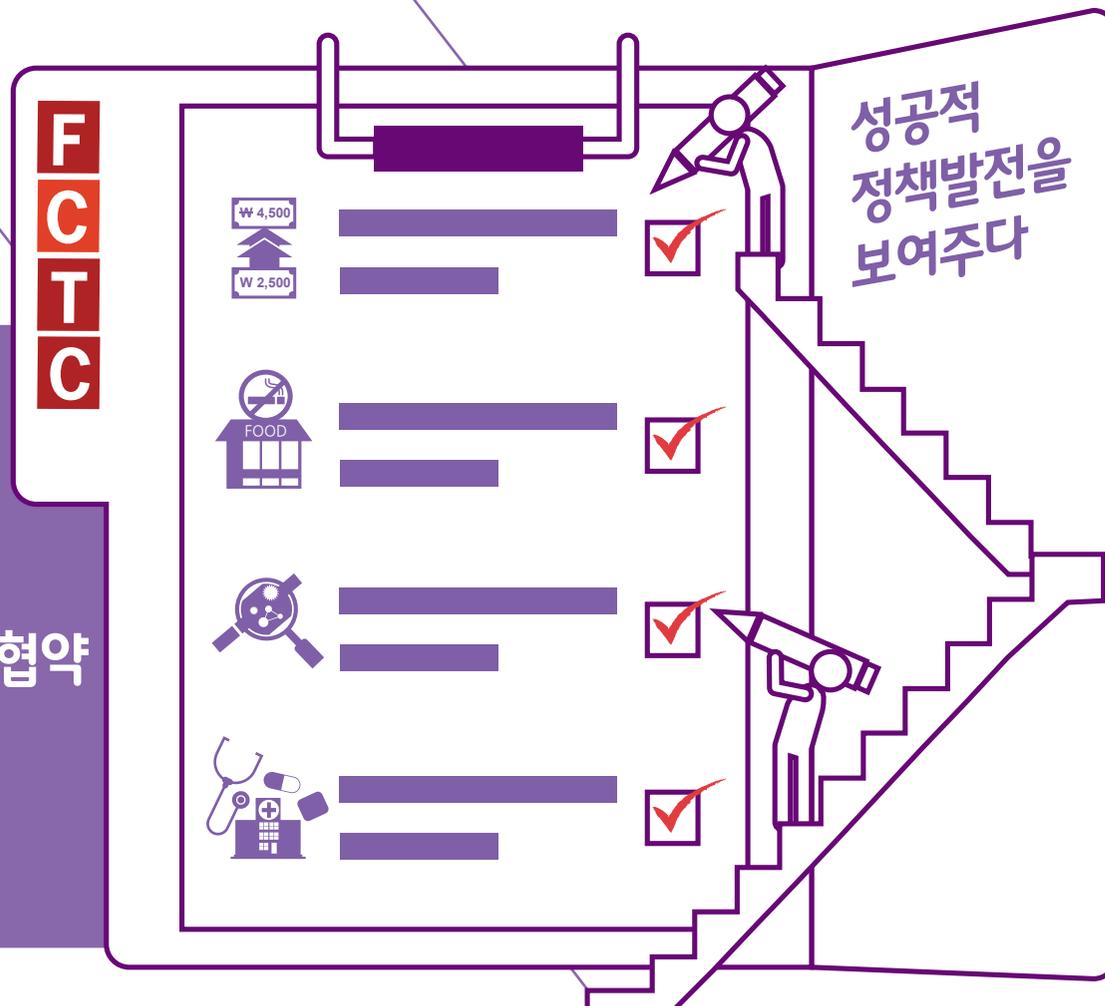


#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서



## C O N T E N T S

### Infographic

02

- 우리나라 FCTC 이행 성과 02

### Monthly Updates

04

- 이 달의 정책 04
- 이 달의 연구 06

### Monthly Highlights

08

- WHO FCTC 국가 이행보고서 09
- 우리나라 제5차 국가 이행보고서  
주요 내용 09
- FCTC 비준 10년의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13
- FCTC 비준 10년, 그 후 15

### Monthly Index

16

- 청소년 흡연을 16

MARCH-APRIL 2016

Vol. 33

# 3·4



# 우리나라 FCTC 이행 성과 제5차 국가이행보고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의무에 따라 매 2년마다 FCTC 사무국에 FCTC 이행현황을 담은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올해 제출한 제5차 이행보고서와 제4차 이행보고서(2014년 제출) 비교를 통해 최근 2년의 우리나라 이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파이프담배, 엽권련, 각련,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14.7)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 (\*15.1, 2,500원→4,500원, 80% ↑)



해외여행객에 대한 사후 면세(tax-free) 담배제품 판매 금지(\*16.1)



향후 과제  
중장기 담뱃세 인상계획 필요

##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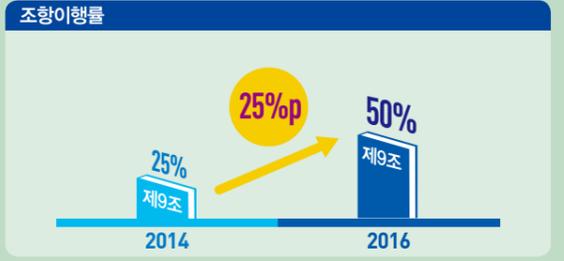
면적과 관계없이 커피전문점 포함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실시(\*15.1)



향후 과제  
당구장, 노래방 등 실내 공공장소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 필요

##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관련 담배 성분 및 첨가물, 배출물에 대한 분석 연구 수행(\*15.9)



향후 과제  
가향 등 담배제품 첨가물과 담배연기 성분 규제 조치 필요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은 담배에 경고문구 표시 추가 의무화(\*14.11)

담뱃갑 경고면적 확대 및 경고그림 도입 확정(\*15.6)  
• 경고문구(30%) → 경고그림(30%) + 경고문구(20%)



향후 과제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 필요

##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매뉴얼 등 금연지원에 관한 종합적 지침 개발·보급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강화(\*15)  
•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실시  
•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실시



향후 과제  
성과 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Quality) 개선과 연계성 제고 필요

\*조향이행률 : WHO에서 국가별 또는 연도별 이행수준 비교를 위해 정한 각 조항별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

2016. 3-4.  
Monthly Updates

## 이 달의 정책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내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의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5월부터 8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1,662곳)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의 세종대로 양쪽 보도를 포함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 서울 시의회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25개의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담배 구입연령 상향 법안 상원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담배제품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하였다. 뉴욕, 보스턴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이미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주(州)로서는 하와이가 첫 번째로 시행한 바 있다.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하와이에 이어 담배 구입 연령을 상향한 두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은 담배 구입 연령 상향 이외에도 구입 연령, 흡연 장소 등에 있어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법안에 대해 짐 우드(Jim Wood) 주 의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앞으로 수백만 달러의 의료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오만, 모든 언론매체 상의 담배 광고 및 판촉 전면 금지

오만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가 모든 종류의 담배 광고와 판촉을 금지하는 시행령(ministerial decision)을 발표하였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하여 읽고, 보고, 듣는 모든 매체에서의 광고와 판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에서의 담배제품 광고가 전면 금지된 셈이다. 4월 11일부터 발효된 이번 시행령은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담배 중독의 만연을 근절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와 전자식 물담배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 인도, 4월 1일부터 담뱃갑 면적 85% 경고그림 의무화

지난 2015년 9월에 고시된 바 있는 인도의 담뱃갑 포장 규제 개정안이 2016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개정안은 담뱃갑 건강경고의 크기를 기존의 앞면 면적의 40%에서 앞·뒷면의 8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건강경고의 최소 크기 또한 가로 3.5cm, 세로 4cm로 규정되어 소포장담배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 확대에 대하여 의회 위원회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이므로 앞·뒷면 면적의 50%로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인도 정부는 보다 강력한 담배규제 의사를 거듭 천명하며 기존의 담뱃갑 앞·뒷면 85% 크기를 단행하였다. 이에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 계열인 ITC와 필립모리스 계열인 Godfrey Philips 등 인도의 주요 담배회사들이 4월 2일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 미국,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한 반면 궐련 사용 감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 내 청소년들의 궐련 및 전자담배 사용을 조사한 결과, 궐련 사용은 감소하고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1년 1% 이하에서 2014년 4%, 2015년 5%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 1.5%에서 2014년 13%, 2015년 16%로 증가하였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의 수는 2014년 246만 명에서 2015년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궐련의 사용률은 중학교에서 2011년 15%에서 2014·2015년 9%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 4%에서 2014·2015년 2%로 감소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물담배(Hookah)의 사용도 2014년 9%에서 2015년 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십대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질병관리본부 책임자 토마스 프리덴(Thomas R. Frieden) 박사는 어떤 형태의 담배도 안전하지 않으며 청소년 시기에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독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싱가포르, 담배 진열 금지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싱가포르에서 담배제품의 진열을 금지하는 법이 3월 14일에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담배제품을 비정규화(de-normalizing)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비흡연자에게 미치는 광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궐련, 시가(cigar), 비디스, 양 훈(말아 피우는 담배) 등 모든 담배에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담배제품을 보지 못하도록 용기 등에 보관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격표를 제시할 수 있다. 가격표는 글자로만 이루어져야 하며(text-only), 표기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브랜드명, 가격, 바코드, 재고수량 등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소매업자들은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라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이 금지되는데, 이는 싱가포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어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광고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 달의  
연구



이 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미국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의  
다중 담배제품 사용

Soneji, S., et al. (2016). Multiple tobacco product use among U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obacco control*, 25(2), 174-180.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1638

본 연구는 미국 내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young adults)이 사용하는 다양한 담배제품이 현재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규제 권한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총 11개 종류의 담배제품(궐련, 시가, 물담배, 씹는 담배, 빠는 담배, 코담배, 머금은 담배 등)의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16~26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 총 1,5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인구학적 특성과 담배사용(단일제품 사용, 이중사용, 다중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448명이 최근 30일 내에 최소 한 가지 종류의 담배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재 담배사용자 가운데 54%가 한 가지 제품을 사용하는 단일제품 사용자(single product users)였으며, 25%는 이중 사용자(dual users), 21%는 세 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multiple users)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일제품은 궐련(49%), 물담배(23%), 시가(17%), 전자담배(5%) 순이었으며, 대부분의 이중 및 다중 사용자는 궐련을 사용하면서 시가, 물담배,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였다. FDA 규제 대상 제품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단일제품 사용자의 46%, 이중 사용자의 84%, 다중 사용자의 85%가 현재 FDA에서 규제하고 있는 담배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미국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의 절반가량이 두 가지 이상의 담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또는 다중 담배사용자라는 점과, 절반에 가까운 흡연자가 현재 국가적 차원의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향후 FDA의 규제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청소년의 판매점 내 전자담배 진열 회상과 전자담배 사용 간 관계에 관한 횡단적 연구

Best, C., et al. (2016). Relationship between e-cigarette point of sale recall and e-cigarette use in secondary school children: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6(1), 1. doi: 10.1186/s12889-016-2968-2

본 연구는 매장에 진열된 전자담배에의 노출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스코틀랜드의 4개의 고등학교에서 횡단조사(cross sectional survey)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스코틀랜드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형매장에서는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소형매장에는 적용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학교는 도시화 수준(도시 vs. 소도시)과 소득수준(높음 vs. 중간/낮음)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종속 변수는 전자담배 사용 경험과 향후 6개월 내 전자담배 사용 의사였으며, 대형매장이나 소형매장에서의 전자담배 진열 회상(recall)이 독립 변수로 설정되었다. 전체 응답률은 87%로 3,808명의 샘플이 확보되었으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매장 진열 외 다른 형태의 전자담배 광고 회상, 흡연 행태, 인구학적 요인 등을 조정하였다. 연구 결과, 소형매장의 전자담배 진열을 기억한 청소년이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OR=1.92, 99% CI 1.61-2.29), 향후 6개월 내 전자담배를 사용할 의사 역시 소형매장(OR=1.80, 99% CI 1.08-2.99) 또는 대형매장(OR=1.70, 99% CI=1.22-2.36)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기억한 청소년의 경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장 내 전자담배 진열 회상과 전자담배 사용 또는 사용의사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전자담배 진열에의 노출과 전자담배 사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물담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Akl, E. A., et al. (2010). The effects of waterpipe tobacco smoking on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9(3), 834-857. doi: 10.1093/ije/dyw021

본 연구는 물담배 사용과 폐암, 호흡기 질환, 치주 질환 및 저체중아와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2008년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2015년 5월에 MEDLINE, EMBASE, ISI Web of Science에서 물담배에 관한 동의어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이 때 시기나 언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고찰에 포함되는 연구의 참고자료도 검토하였다. 고찰 대상에는 코호트 연구, 실험대조군 연구(case-control), 횡단적 연구 등이 포함되었으며, 보고서, 학술대회 초록, 사설, 평론은 제외하였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생리학적 결과를 조사한 연구 및 물담배와 다른 담배제품을 구별하지 않은 연구도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메타분석은 고찰에 포함된 모든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총 50개 연구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분석 결과 물담배 사용이 만성폐쇄성폐질환(OR=3.18, 95% CI=1.25-8.08), 기관지염(OR=2.37, 95% CI=1.49-3.77), 구강암(OR=4.17, 95% CI=2.53-6.89), 폐암(OR=2.12, 95% CI=1.32-3.42), 저체중아(OR=2.39, 95% CI=1.32-4.32), 대사증후군(OR=1.63-1.95, 95% CI=1.25-2.45), 심혈관계 질환(OR=1.67, 95% CI=1.25-2.24) 및 정신 건강(OR=1.30-2.4, 95% CI=1.20-2.80)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물담배 사용과 건강과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쉐련 외 담배제품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6. 3-4.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이 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 FCTC, 담배규제 정책의 동력이 되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서 제출 시기가 돌아왔다.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이 당사국으로서 FCTC 조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지난 2년, FCTC 이행보고서를 통해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이 협약에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WHO FCTC 국가 이행보고서

우리나라가 2003년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현재 당사국이 180개국에 이른다. FCTC 당사국은 담뱃세 인상, 담배제품 불법거래 규제 등 담배의 수요 및 공급 감소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협약에 담겨있는 **담배규제 정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제21조(보고 및 정보교환)에 따라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열리는 연도, 즉 2년마다 각 조항별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4번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4월 말 제5차 보고를 마쳤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21조(보고 및 정보교환) 제1항

1. 각 당사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입법적·집행적·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
- (나)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한 제약 및 장애, 그리고 이러한 장애의 극복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 (다) 적절한 경우, 담배 규제활동을 위하여 제공받거나 수령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정보
- (라) 제20조에 규정된 감시 및 연구에 관한 정보
- (마) 제6조 제3항(담배제품 세율 및 소비 동향), 제13조 제2항 및 제3항(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 혹은 제한적 조치), 제13조 제4항 (라)호(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을 위한 담배업계의 지출), 제15조 제5항(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정보) 및 제19조 제2항(담배의 건강위해 및 법 관련 정보)에 규정된 정보

## 우리나라 제5차 국가 이행보고서 주요 내용

FCTC 국가이행보고서는 해당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격년으로 제출함으로써 현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전차 보고서와 비교를 통해 그간 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원이다. 우리나라 또한 올해 보고서 내용을 통해 FCTC 이행현황과 지난 2년 동안의 정책적 도약을 살펴볼 수 있다.

**조항이행률**은 WHO에서 선정한 협약의 조항별 핵심 지표(총 148개)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당사국의 이행현황을 분석·모니터링하는 기준이 된다. 먼저 보고서에 포함된 전체 조항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항이행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66%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5%p 상승하여 협약 이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6조부터 제14조에 해당하는 지표(83개)의 조항이행률이 69%로 전차에 비해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담배수요 감소조치에서의 이행개선이 두드러졌으며, 주요조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핵심 지표(개)	2014년 제4차 이행보고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이행 지표(개)	조항이행률	이행 지표(개)	조항이행률
조항 전체	148	90	61%	98	66%

###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담배소비 감소를 목표로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기존 켈련, 전자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파이프담배, 엽켈련, 각련, 물담배 등 각종 담배제품에도 부과**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당시)안전행정부가 “범(凡)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담뱃세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0년 만에 **2015년 1월부터 모든 담배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켈련의 경우 한 갑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이 80% 인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사후면세점(Tax-free shops) 판매 품목에서 담배가 제외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사후면세점 구입 담배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조항	핵심 지표	2014년 제4차 이행보고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 담배소비감소를 목표로 한 조세정책의 시행	○	66%	○	100%
	•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 및 무관세 담배 제품의 판매제한 또는 금지	×		○	
	• 해외 여행객에 의한 면세 및 무관세 담배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	○		○	

### 제8조 담배연기예의 노출로부터 보호

협약 제8조에서는 담배연기예의 노출, 즉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연기가 100%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성과로써, 2015년 1월부터 기존 일정면적(100㎡ 이상)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적용되었던 **휴게·제과·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사유작업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면적이거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실내공간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행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항	핵심 지표	2014년 제4차 이행보고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제8조 담배연기예의 노출로부터 보호	•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	59%	○	65%
	• 정부청사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보건의료시설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교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대학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사유작업장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일부)		×(일부)	
	• 항공기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기차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지상대중교통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선박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영업용 차량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일부)		×(일부)	
	• 개인용 차량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문화시설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일부)		×(일부)	
	• 쇼핑몰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술집·바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일부)		×(일부)	
• 나이트클럽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			
• 식당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일부)	○			

###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협약 제9조에서는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흡연폐해연구소를 설치하여 담배의 성분, 첨가물 및 배출물 등을 분석하고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유해성 측정을 시작했다. 그간 일부 민간대학의 연구 결과가 전부였던 것에서 국가적 차원의 연구기관이 설립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가향물질 및 각종첨가물 등 담배제품 성분이나 배출물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며, 성분 및 배출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조항	핵심 지표	2014년 제4차 이행 보고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 담배제품 성분의 시험 및 측정	X	25%	O	50%
	• 담배제품 배출물의 시험 및 측정	O		O	
	• 담배제품 성분의 규제	X		X	
	• 담배제품 배출물의 규제	X		X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2014년 7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기존 쉐련에만 표기하던 경고문구를 당해 11월부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13년의 법 개정 노력 끝에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쉐련을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추가 표기해야 하며, 경고면적도 **기존 담뱃갑의 30%에서 50%(경고그림 30%, 경고문구 20%)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발표했으며, 오는 6월에 구체적 표기방법을 규정하고 최종 결정된 경고그림을 고시할 예정이다.

조항	핵심 지표	2014년 제4차 이행 보고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 담배제품 포장에 광고 및 판촉을 하지 않도록 규제 (plain packaging)	X	70%	X	90%
	• 오도문구 금지	O		O	
	• 건강경고 부착	O		O	
	• 건강경고의 국가 승인 의무화	O		O	
	• 건강경고의 순환사용	O		O	
	• 크고, 분명하고, 가시적인 건강경고의 사용	O		O	
	• 건강경고가 주요면적의 30% 이상을 차지	O		O	
	• 건강경고가 주요면적의 50% 이상을 차지	X		O	
	• 경고그림 부착	X		O	
	• 경고를 해당국의 주요언어로 표기	O		O	

###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앞서 언급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확대·강화가 포함됨에 따라 이미 핵심 지표 기준으로는 이행 수준이 높은 제14조 또한 이행 성과가 두드러졌다. 2005년부터 실시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했으며, 포괄적·전문적 담배의존치료 서비스의 제공과 약물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15년부터 지역금연지원센터 지정,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금연캠프 실시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 및 보급되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매뉴얼 등 금연지원사업의 지침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항	핵심 지표	2014년 제4차 이행보고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이행 여부	조항이행률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 지침 개발 및 보급	X	95%	O	100%
	· 금연 유도 및 촉진을 위한 언론 캠페인	O		O	
	· 여자 청소년 및 젊은 여성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	O		O	
	· 여성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	O		O	
	· 임산부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	O		O	
	· 금연상담전화 도입	O		O	
	· 금연 촉진을 위한 지역 행사 개최	O		O	
	·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O		O	
	·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O		O	
	· 직장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O		O	
	· 스포츠 환경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O		O	
	· 국가 담배규제프로그램 내 금연 진단 및 치료 포함	O		O	
	· 국가 의료프로그램 내 금연 진단 및 치료 포함	O		O	
	· 국가 교육프로그램 내 금연 진단 및 치료 포함	O		O	
	· 보건의료체계 내 금연 진단 및 치료 포함	O		O	
	· 의과대학 내 담배의존치료 관련 교육과정 포함	O		O	
	· 치과대학 내 담배의존치료 관련 교육과정 포함	O		O	
· 간호대학 내 담배의존치료 관련 교육과정 포함	O	O			
· 약학대학 내 담배의존치료 관련 교육과정 포함	O	O			
· 담배의존치료를 위한 약물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O	O			

## FCTC 비준 10년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이와 같이, 지난 2년은 FCTC 국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0년 만에 담배가격이 인상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년 만에 경고그림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실내 공공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국가서비스도 한층 강화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단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2005년 7월 21일 FCTC가 비준된 이후 10년간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 발효 10년을 기념하여 FCTC가 협약 당사국 및 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에 따라 총 8인이 세계 담배규제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FCTC의 발효와 이행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업무가 착수되었다.**

영향평가 전문가 그룹은 FCTC가 세계적 담배사용의 만연으로부터 인류의 건강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세부항목에 따른 협약 영향력을 분석하여 올 11월 인도에서 개최될 제7차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FCTC 영향평가 수행 범위

#### FCTC가 국가 담배규제 법률 및 정책 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FCTC 이행을 위한 각국 법령의 내용 및 개선성과 등에 대한 세부 고찰

#### 국제법으로서 FCTC가 당사국의 담배규제법 보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담배업계의 저해활동에 대응한 정부의 대응전략이나 관련 법적 소송에서 FCTC 주요 의무사항 및 협약 인용 등의 사례 연구

#### FCTC가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흡연율(담배사용률), 간접흡연 노출률 등에 관한 정기적 국가 감시체계 실시 국가 증가 등 협약 비준 및 이행에 따른 변화 추이 분석

- 담배 관련 질병 및 사망에 대한 FCTC 이행 영향 분석 및 WHO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흡연 관련 사망 추정치에 대한 환류조치 등

FCTC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은 세계 전체의 협약 영향 분석에 더하여 국가별 영향 분석을 위한 대표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12개 대표국가에 영국, 터키, 필리핀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선정되었다.**

## 우리나라 FCTC 영향평가 주요 결과

지난 3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FCTC 영향평가를 위하여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 페카 푸스카(Pekka Puska) 교수와 부의장인 마이크 도브(Mike Daube) 교수가 방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를 비롯한 국내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 책임자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영향평가에 참여하였다. 영향평가에서는 FCTC 전체 38개 조항 가운데 담배규제 정책,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17개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등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집단 심층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FCTC 주요 조항에 관한 심층토론 내용

- 각 조항이 국가 내 관련 담배규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는가?
- 각 조항이 국가 내 관련 담배규제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 확보에 기여하였는가?
- 각 조항이 국가 내 관련 담배규제 정책 추진 및 세부사업 이행에 기여하였는가?
- 각 조항이 국가 내 관련 담배규제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협력에 기여하였는가?
- 국가의 협약 조항 이행 효과에 관한 근거가 있으며,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내외 담배규제 분야 전문가집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금번 영향평가 결과, FCTC는 2005년 국내 비준 이후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도입, 개발, 발전 및 개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FCTC는 국내 주요 담배규제 정책의 추진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FCTC는 담배사용으로 인한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의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한 조치를 다루고 있는데,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은 모두 현존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항별 이행 촉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수록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사안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채택하는 의정서(Protocol), 그리고 협약의 이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국의 결의를 다지는 선언문(Declaration) 등의 채택은 국내 금연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또한, FCTC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협약 비준 이전인 1995년에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흡연행위 즉 담배 수요 측면에 집중된 국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협약에서는 담배제품의 수요 감소를 위한 조치만큼 담배생산, 제조,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공급적 측면의 규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수요 및 공급 감소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담배규제 정책이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부처·다학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역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등을 통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통한 국가 담배규제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책의 개발, 추진 및 평가 단계에서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환경의 조성과 체계 마련에 FCTC가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제5차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6차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한 것은 FCTC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기여한 부분임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협약 이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도모하고 담배규제에 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마련된 시점이기도 하다. 제5차 총회가 개최된 2012년 금연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시작으로 국내 금연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5년 담배규제 관련 국제회의 개최·운영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FCTC 영향평가 전문가 그룹은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담배규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먼저, 국가 담배규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금연지원센터와 흡연폐해연구소와 같은 담배규제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협약이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 담배규제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학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담배사용의 피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국가적 단위의 금연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담배규제 추진에 필요한 정책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매우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2005년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시작으로 중증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병·의원 전문치료 등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우수성뿐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담배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적 노력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이행 사례로 손꼽혔다. 특히, 최근의 성과에 대한 격려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사례 역시 FCTC와 해외 당사국의 선진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경고그림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 WHO FCTC 국가 영향평가 수행



왼쪽부터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 페카 푸스카(Pekka Puska) 교수,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부의장 마이크 도브(Mike Daube) 교수

한편, 향후 FCTC의 포괄적 이행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으로 제5차 이행보고서에도 나타났듯 담배회사의 입법 또는 정책관계자 로비 등 담배업계 정책 저해활동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제5조3항) 부재, 담배수요 감소조치 조항 가운데 이행률(0%)이 가장 낮은 제13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에 대한 법령 부재 등이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 이행률 미진 조항\*

구분	핵심 지표 요약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 조항이행률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 시행, 초국경적 광고 근절을 위한 협력 등	0%
제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 담배불법거래 감시 및 조사를 도울 수 있는 담배유통 추적제도 개발, 국경 간 담배무역에 관한 불법 무역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등	20%
제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제공	· 담뱃잎 경작자, 담배업계 종사자, 담배 판매 소매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0%
제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 담뱃잎 경작 및 담배제조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와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25%

\*조항이행률 50% 미만

## FCTC 비준 10년, 그 후

이처럼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은 이행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FCTC 당사국으로서 이행률이 저조한 조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정량적 지표인 이행률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 측면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테면, 담배가격의 실질가치 인상을 위한 중장기 담뱃세 인상계획 마련,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금연지원서비스의 질 개선 및 서비스 간 연계성 제고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이 지난 2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에 FCTC가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의무사항 중 하나인 이행현황 보고만 하더라도 정책의 성과와 미진사항을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도 FCTC는 국가 담배규제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다음 국가 이행보고서에서 더 큰 성과를 보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달의 지표에서는 담배 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 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 청소년 흡연율

Prevalence of tobacco use by youth



### 지표의 개요 및 의의

청소년은 한 국가의 미래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담배회사의 입장에서는 업계 활동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미래 고객이기도 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담배 사용에 대한 공식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청소년의 담배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단 현재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담배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용어 및 지표 정의

청소년 흡연자는 조사 날짜까지 특정 기간 동안 매일 흡연을 하거나 최소 한번 정도 간헐적으로 흡연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매일 사용하는 경우를 매일 흡연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혹은 최소 수준 이상 사용한 경우)를 현재 흡연자로 분류한다. 총 청소년 인구 비율로 명시된 청소년 흡연율은 가장 최근의 국가 청소년 흡연 행태 관련 조사에 따라 청소년 100명 당 현재 흡연자 수를 뜻한다.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에 대해서는 사용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는 평생사용률 또는 경험률과 같은 데이터의 수집도 가능하다.

### 국내외 최신동향

#### | 세계의 청소년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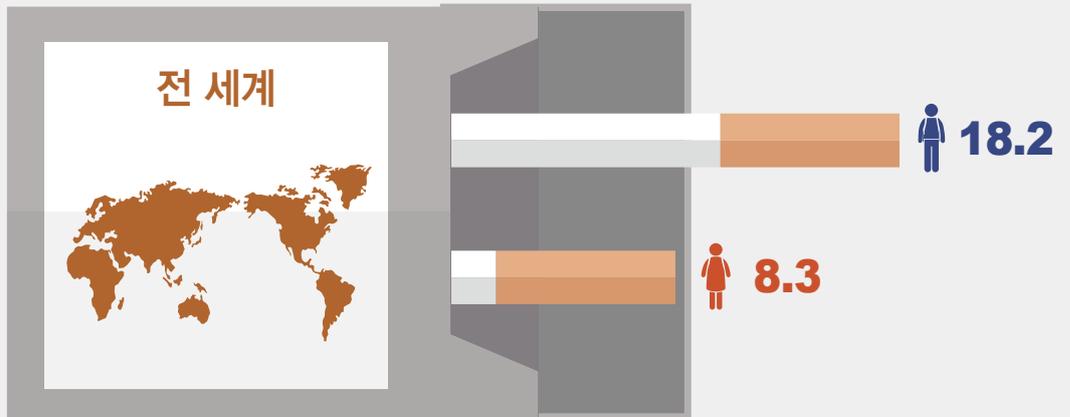
WHO에서 발간하는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전 세계 남녀 청소년(13~15세)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8.2%와 8.3%로 나타났으며, 6개 지역 가운데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동지역(21.3%),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미주지역(13.8%)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의 경우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 문화적 혹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성별 간 흡연 행태 차이가 청소년 세대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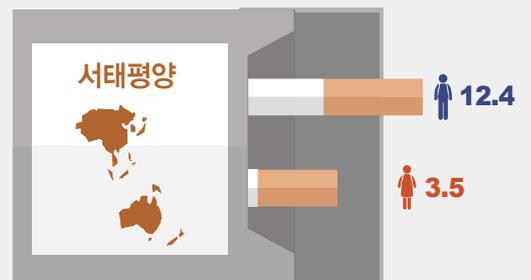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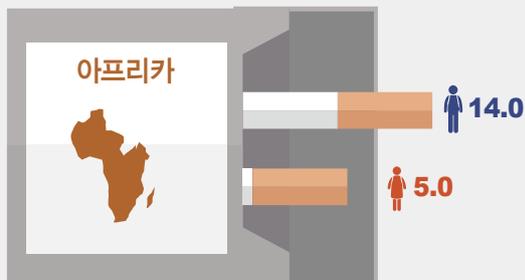
# 세계 청소년(13-15세) 현재 흡연율

(단위 : %)

전체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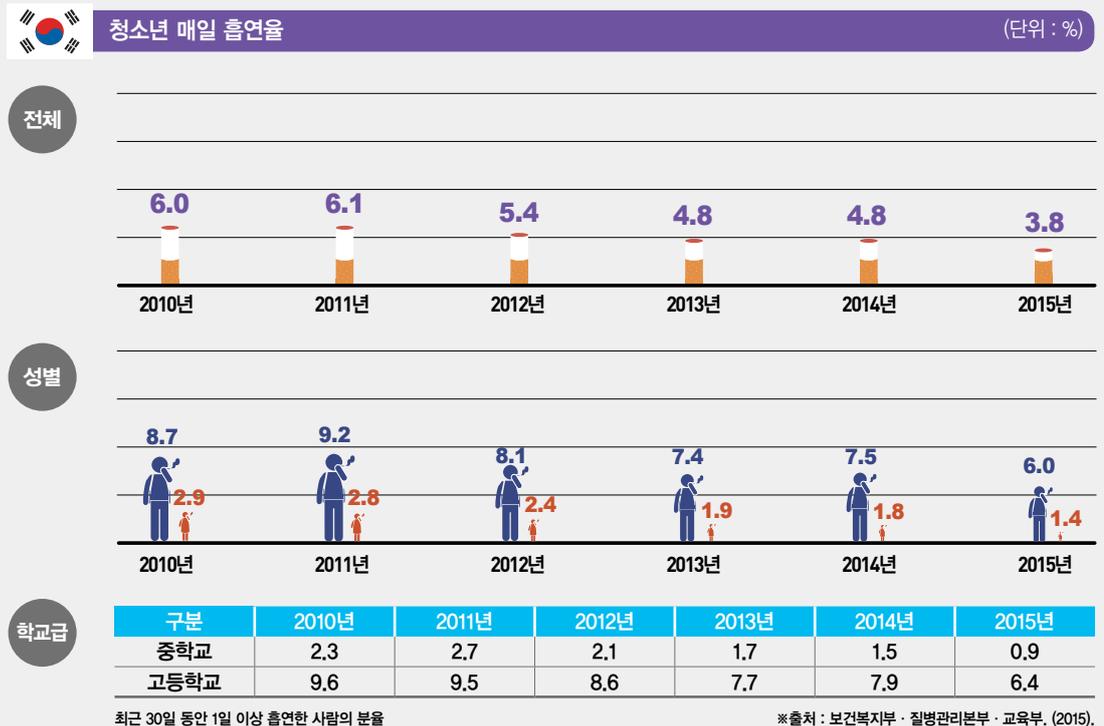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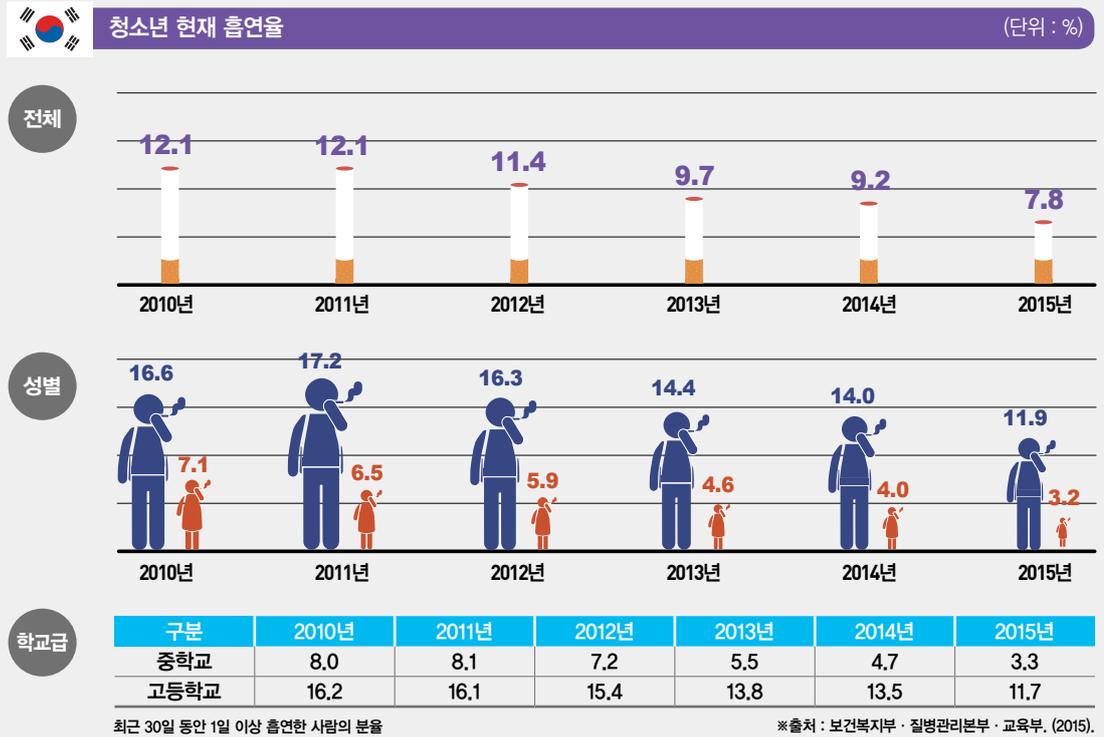


\*2007~2014년(아프리카, 유럽은 2000~2007년) 데이터 중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출처 :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 |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가장 최근(제1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남녀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매일 흡연한 비율을 조사하는 청소년 매일 흡연율의 경우, 2014년에 남자 청소년 및 고등학생 흡연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 흡연율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 담뭍값 인상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흡연예방사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법제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FCTC 바로알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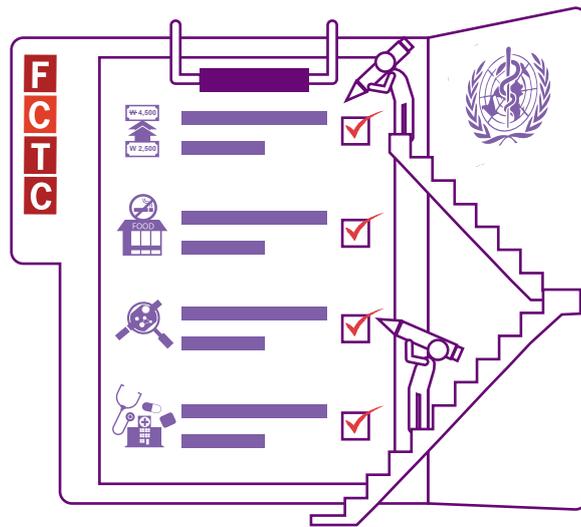
The 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decision, Impact assessment of the WHO FCTC, FCTC/COP(6)13 (18 October 2014) Available at [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13\)-en.pdf](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13)-en.pdf)

The 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Impact assessment of the WHO FCTC: Report of the Convention Secretariat, FCTC/COP/6/15 (16 June 2014) Available at [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_15-en.pdf](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_15-en.pdf)

WHO. (2014). 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vailable at <http://www.who.int/fctc/reporting/2014globalprogressreport.pdf>

WHO. (2015).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Available at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70250/1/9789240694439\\_eng.pdf?ua=1&ua=1](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70250/1/9789240694439_eng.pdf?ua=1&ua=1)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문의 TEL 02-3781-3500 FAX 02-3781-2299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시오.

홈페이지 : [www.khealth.or.kr](http://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mailto:tcir@khealth.or.kr)

📖 5월호 예고

2016년 5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규격화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에 관하여 알아보니다. 호주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도입 효과 및 국외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담뱃갑 포장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